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첨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1145
-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안일 : 2023년 8월 14일
- 회부일 : 2023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('22.7. 개정) 및 「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·재무회계 운영규정」('23.1. 개정)과 동일하게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을 변경하고, 명칭 현행화 및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물품의 품종 구분(비품(비소모품), 소모품) 기준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(안 제60조 관련 별표2)
- 나. 회계관직 등 명칭 현행화 및 모호한 표현 구체화
 - 회계관직 명칭 현행화: 경리관, 분임경리관 → 재무관, 분임재무관(제63조, 제64조, 제65조, 제72조)
 - 위원회 명칭 변경: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→ 기부심사위원회(제66조)

- 모호한 표현 명확화

- ▶ 물품관리관 → 물품관리관, 물품출납공무원, 물품운용관(안 제2조)
- ▶ 주관부서장,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) → 물품운용관, 물품출납공무원(분임물품출납공무원)(안 제63조, 제64조, 제66조, 제75조, 제76조, 제77조, 제81조, 제8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제외법령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(2023. 6. 8.~6. 28.) 결과: 의견없음.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(舊)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개정 사항과,
 -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근거한 행정 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 * 개정(2018.7.)에 따른 비품과 소모품에 대한 ‘물품 구분 기준’ 변경 사항 및
 -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심의 위원회 근거, 물품관리 공무원 관직명 등,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을 상위 법령 규정 형태에 맞추어 현행화하는 등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개정 주요 내용별 세부내용 검토

1) 회계관계공무원 관직명 현행화(안 제63조, 제64조, 제65조, 제72조)

- 안 제63조 등 4개 조문 개정안은 회계관계공무원*의 관직명**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“경리관”, “분임경리관”을 각각 “재무관”, “분임재무관”으로 개정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.

*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 징수관·재무관·재산관리관
· 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부채관리관·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·분임자(分任者) 등(이하 "회계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**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제1항의 별표 1 참조, 첨부)

- 한편, 구(舊) 「지방재정법」 개정*에서는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, “채무 관리관”을 “부채관리관”으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명을 개정*한 바 있고, 본 개정조례안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.

* 구(舊) 「지방재정법」 (2014.5.28. 개정, 2014.11.29. 시행), 이후 「지방회계법」 (2016. 5. 29. 제정, 2016.11.30. 시행)으로 이관하여 규정.

* <본 개정안 관련 「지방재정법」 개정내용>

「지방재정법」 (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, 일부개정, 2014. 11. 29. 시행)

의결주문(발췌)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2항 본문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제68조 및 제69조 중 “경리관”을 각각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제75조 본문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제91조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, “채무관리관”을 “부채관리관”으로 한다.

부 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의2, 제27조의5 제2항,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, 제33조제11항, 제74조, 제87조의3,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0조(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,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- 다만, 재무국은 관련 법률(「지방재정법」) 개정 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 회계관계공무원 관직명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 용어와 다른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, 이를 해석하는 데 혼란이 생기고 집행하는 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, 관련 법령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적기 대응을 통해 본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〈 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 대비표(발췌) 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63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<u>주관부서장</u>은 물품을 매입·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<u>물품출납원</u>을 거쳐 <u>경리관</u>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(수리·제조)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.</p> <p>제64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경리관</u>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3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.</p> <p>제65조(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<u>분임경리관</u>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(수리·제조)할 수 있다.</p> <p>제72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⑥ (생 략)</p> <p>⑦ <u>경리관</u>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⑧ (생 략)</p>	<p>제63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<u>물품운용관</u>----- ----- <u>물품출납공무원</u>을 거쳐 <u>재무관</u>----- -----.</p> <p>제64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재무관</u>----- -----.</p> <p>제65조(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 <u>분임재무관</u>----- -----.</p> <p>제72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재무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

2) 기증품의 취득 관련 심의 위원회 명칭 현행화(안 제66조)

- 안 제66조는 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”를 「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“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”로 개정하려는 것임.
- 한편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(제5조제1항),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(제5조제2항)하면서,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(제5조제3항)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당시부터 자발적 기탁 금품의 접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기부심사위원회”를 둔다고 규정(제6조)하고 있음.

〈 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 대비표(발췌) 〉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기증품의 취득)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중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<u>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</u>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	제66조(기증품의 취득) ① <u>물품운용관</u> 「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(이하 “기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---.
② (생략)	② (생략)
③ <u>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</u> 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(분임물품출납공무원)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	③ <u>기부심사위원회</u> -----

<p>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.</p> <p>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<u>주관부서장</u>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물품운용관</u>-----</p> <p>-----.</p>
---	---

- 다만, 본 개정안은 기부심사위원회 근거 조례 제정*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, 상당 기간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본 조례의 완결성이 저해되어 왔다는 점에서, 관련 법규 제·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* 「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2013.8.1., 제정, 2014.1.1. 시행

3) 비품·소모품 품종 구분 기준 개정사항 반영(안 제60조의 별표2)

- 안 제60조의 별표2는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 * 개정(2018.7.)으로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이 취득단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된 사항과,

* 근거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8조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 등

- 「지방재정법」 등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·재무회계 운영규정」 * 개정(2022.12.20., 시행 2023.1.1.)으로 집기비품의 자산화 기준이 단위가액 10만원 이상에서 50만원** 이상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60조의 별표2를 재구성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* 근거: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

** 금액 단위 띄어쓰기 관련: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씀이 원칙이나, 본 안에 대한 근거인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에서 붙여 쓰고 있는바 이에 따름.

- 다만, 재무국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, 이에 근거한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 개정(2018. 7.)에 맞추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- 한편, 본 개정안은 단순히 근거 법령의 규정 사항을 조례에 다시 확인하여 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, 이는 해당 법령이 개폐되었음에도 관련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못 할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(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 참조),
-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별표(본 조례 제60조 및 별표 2)를 삭제 개정하여, 직접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.

* 경기도는 소모품 관련 사항을 조례 규정(별표)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〈 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 대비표(발췌) 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60조(물품의 분류) 물품의 품종·상태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.</p> <p>[별표 2]</p> 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<u>물품의 품종·상태구분</u></p> <p>1. 물품의 분류 가. 비품 :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. 나. 소모품 :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거나 쉬운 물품과 공작물, 그 밖에 물품이나 공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품종구분 기준 가. 비품 (1)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,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</p>	<p>제60조(현행과 같음).</p> <p>[별표 2] 물품의 품종·상태 구분</p> 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<u>물품의 품종·상태 구분</u> (제60조 관련)</p> <p>1. 물품의 품종 구분 가. 비품(비소모품) :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1)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,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)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. 소모품 :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거나 쉬운 물품과 공작물, 그 밖에 물품이나 공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 1)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</p>

<p>아니하는 물품</p> <p>(2)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</p> <p>나. 소모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(예: 약품, 유류, 수선용 재료 등) (2)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,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(예: 시험용품, 사무용품, 공구 등) (3) 다른 물품의 수리, 완성제작(생산)하거나 시설 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(예: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, 건축자재 등) <p>3. 물품상태 분류기준</p> <p>가. 신 품 : 신 품 및 신 품과幾乎 동일한 물 품</p> <p>나. 중 고 품 : 사용된 물 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 품</p> <p>다. 요정비 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 품</p> <p>라. 폐 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 품</p>	<p>없는 물 품(예: 약 품, 유 류, 수 선용 재료 등)</p> <p>2)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 품 (예: 시험용 품, 사무용 품, 공 구 등)</p> <p>3) 다른 물 품을 수립·조립·제작(생 산)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 품(예: 수리용 부속 품, 생산원료, 재료, 건축자재 등)</p> <p>4)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 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 품</p> <p>2. 물 품의 상태 구분</p> <p>가. 신 품 : 사용되지 않은 물 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 품</p> <p>나. 중 고 품 : 사용된 물 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 품</p> <p>다. 요정비 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 품</p> <p>라. 폐 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 품</p>
--	---

4) 기타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63조, 제64조, 제66조, 제75조, 제76조, 제77조, 제81조, 제88조)

- 안 제2조제2항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*으로서 현행 “물품관리관”을 “물품관리관”, “물품출납공무원”, “물품운용관”으로 나누어 개정하고, 안 제63조 등 8개 조문에서는 “물품출납원”, “주관부서장” 또는 “분임물품출납원”은 각각 “물품출납공무원”, “물품운용관” 또는 “분임물품출납공무원”으로 개정하는 등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직접 반영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

*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 징수관·재무관·재산 관리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부채관리관·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·분임자(分任者) 등(이하 "회계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- 상위 법령과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용어의 사용 등에 있어서 이를 일관되게 규정함으로써, 조례의 명확한 해석과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는 2005년 8월 4일 제정*부터 물품관리관을 비롯하여 이미 물품출납공무원, 물품운용관 관직명을 정의하고 있는바,

* <본 개정안 관련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정 내용>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률 제7665호, 2005. 8. 4., 제정, 2006. 1. 1. 시행 |
|--|

제52조 (물품관리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“**물품관리관**”이라 한다.

제53조 (물품출납공무원) ① 물품관리관(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(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위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“**물품출납공무원**”이라 한다.

제54조 (물품운용관)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(이하 “**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**”라 한다)를 위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“**물품운용관**”이라 한다.

- 재무국은 근거 법령의 제정 후 1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, 본 조례 개정 시기가 상당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임.

〈 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 대비표(발췌) 〉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관리책임) ① (생 약) ② 시장은 재무국장을 재산 및 물품 관리총괄관, 재산관리과장을 재산관리보조총괄관, 재무과장을 물품관리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, <u>물품관리관</u>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(관리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 <u>물품관리관</u> , <u>물품출납공무원</u> , <u>물품운용관</u> -----. -----.
제63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<u>주관부서장</u> 은 물품을 매입·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<u>물품출납원</u> 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(수리·제조)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.	제63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<u>물품운용관</u> ----- ----- <u>물품출납공무원</u> 을 거쳐 <u>재무관</u> ----- ----- -----.
제64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 <u>주관부서장</u> 이 제63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도록 하여야 한다. ② <u>경리관</u> 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3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.	제64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 <u>물품운용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재무관</u> ----- ----- -----.
제66조(기증품의 취득)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<u>주관부서장</u> 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	제66조(기증품의 취득) ① ----- ----- <u>물품운용관</u> ----- [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

<p>아야 한다.</p> <p>② <u>주관부서장</u>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</u>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(분임물품출납공무원)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.</p> <p>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<u>주관부서장</u>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75조(보관책임)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,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,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<u>주관부서장</u>이, 전용품은 <u>주관부서장</u>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제76조(일시보관)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<u>주관부서장</u>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</p>	<p>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(이하 “기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-----.</p> <p>② <u>물품운용관</u>-----.</p> <p>③ <u>기부심사위원회</u>-----.</p> <p>④ -----.</p> <p><u>물품운용관</u>-----.</p> <p>제75조(보관책임) -----.</p> <p><u>물품운용관</u>이, 전용품은 <u>물품운용관</u>의 지도·감독-----.</p> <p>제76조(일시보관) ① -----.</p> <p><u>물품운용관</u>-----.</p>
---	--

<p>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 제77조(물품의 망실 · 훼손보고) ① <u>주관부서장</u>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· 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 제81조(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) <u>물품관리관 · 물품출납원, 주관부서장</u> 또는 <u>분임물품출납원</u>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제88조(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) 변경 · 해체되는 조직의 <u>주관부서장</u>은 해당 조직의 변경 · 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, 조직 변경 · 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제77조(물품의 망실 · 훼손보고) ① <u>물품운용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81조(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) <u>물품관리관 · 물품출납공무원, 물품운용관</u> 또는 <u>분임물품출납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8조(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) ----- <u>물품운용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-

전문위원	김정덕	입법조사관	최석훈
------	-----	-------	-----

불임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<별표 1>

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

1. 광역시·도

관직명	본청	지방의회	제1관서	기타관서·임시관서
회계책임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회계업무담당실·국장 ▪ 회계부서에 실·국장직제가 없는 시·도는 기획조정실장 	-	-	-
정수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입업무담당국장 ▪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무처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▪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▪ 소방본부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서의 장
분임정수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입업무담당과장 ▪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·과장 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입업무담당과장 	-
재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회계업무담당국장 ▪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·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▪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무처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▪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(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) ▪ 소방본부장 	-
분임재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·도는 회계업무담당보장 ▪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▪ 각 실·과장(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총무담당관 (의사담당관,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등에 한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회계업무담당과장 (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) ▪ 각 실·과장(제1관서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서의 장·임시관서의 장
총괄재권관리관	▪ 세입업무담당국장	-	-	-
채권관리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각 실·본부·국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무처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▪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▪ 소방본부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서의 장
총괄부채관리관	▪ 예산업무담당실(국)장	-	-	-
부채관리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각 과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총무담당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▪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서의 장
총괄기금관리관	▪ 예산업무담당실(국)장	-	-	-
통합지출관	▪ 회계업무담당과장	-	-	-
지출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출업무담당 ▪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 소방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출업무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출업무담당 	-
수입금출납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입업무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입업무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입업무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입업무담당과장 ▪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
일상경비등출납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각 실·과 서무업무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총무업무담당(본청 일상경비등에 한함) ▪ 의정(의사)업무담당 ▪ 주무전문위원실 지출업무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각 실·과 서무업무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서무업무담당과장 ▪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(자)
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출업무담당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출업무담당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출업무담당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서무업무담당자
	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			

※ 「지방회계법」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별도로 지정